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09 발의연월일: 2022. 9. 8.

발 의 자: 강선우·강득구·강병원

강준현 · 김경만 · 양경숙

윤영덕 • 이동주 • 이수진

정태호 · 최종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,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투약내역을 확인한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.

하지만,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(이하 "조회서비스"라 함)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,038명(국내 의사 11만명 중 1.8%)이며, 조회 횟수는 31,493회에 불과한데, 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한 종류에 대해서만 113만 5,797건이 처방된 점을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과 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제30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 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 인하여야 한다.

제6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마약류 투약 등) ① (생	제30조(마약류 투약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
	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
	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
	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
	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</u>
	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
	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
	<u>한다.</u>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6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69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의2.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
	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
	<u>마약류취급의료업자</u>
7. ~ 10. (생 략)	7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